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137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2호, 2017. 2.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능성화장품 범위, 표시, 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5.29. 공포, 2017.5.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57호, 2017.1.12. 공포, 2017.5.30. 시행)에 따라 염모제, 제모제 등 의약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군 및 신규지정 기능성 화장품의 주요 성분들에 대해 사용한도를 지정하거나 배합금지성분을 조정하여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 및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염모제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배합금지로 지정되어 있는 표준제조기준 <구분I> 삭제 및 자구 수정(안 별표1)

-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 <구분I>에 수재된 염모성분 중 EU에서 사용금지로 지정하고 있는 1개를 제외한 성분(톨루엔-3,4-디아민)에 대해 사용금지 조항 삭제 및 자구 수정(N-[4-[[4-(디에칠아미노)페닐][4-(에칠아미노)-1-나프탈렌일]메칠렌]-2,5-사이클로헥사디엔-1-일리딘]-N-에칠-에탄아미늄 및 그 염류)

나. 사용금지 중 염모제 성분에 대해 단서조항 신설(안 별표1)

- EU에서 염모제 성분으로 관리하는 원료 중 국내 화장품에는 사용금지 원료인 '2,7-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 등 35개에 대하여 단서조항 신설로 염모제 사용 성분 확대

다. 의약품(아토피, 여드름, 탈모치료제 등) 주성분 등으로 사용되는 11개 원료 금지성분 추가(안 별표1)

-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 등 11개 원료를 금지성분 목록에 추가

라. 염모용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기준 신설(안 별표 2)

- 의약외품 염모제 표준제조기준 성분을 반영하여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등 41개 성분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

*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염모제 등의 표준제조기준 준용

마. 신규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추가 및 자구 수정(안 별표 2)

- 염모제, 제모제, 탈모증상 및 여드름 증상 완화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추가 및 자구 수정

바. 살균·보존제 성분 등 염류 기준 명확화 및 자구수정(안 별표 2)

-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염류에 대해 한정적인 것으로 오인될 소
지가 있어 표현을 명확화하고 다르게 명명되는 동일성분에 대한 자
구 수정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
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화장품정책과, 전
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

「화장품법」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2호, 2017.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2. 의약품의 표준제조기준 제1장 염모제등의 표준제조기준 <표1> 유효성분의 종류 중 “구분 I”항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2,7-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를 “2,7-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다만, 2,7-나프탈렌디올은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0 % 이하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1-나프톨 및 그 염류”를 “1-나프톨 및 그 염류(다만, 1-나프톨은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2.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니트로-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예 :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설페이트)”을 “2-니트로-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예 :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설페이트)(다만, 니트로-p-페닐렌디아민은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3.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1,5-디-(베타-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2-니트로-4-클로로벤젠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옐로우 No10)”을 “1,5-디-(베타-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2-니트로-4-클로로벤젠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옐로우 No 10)(다만,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1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3,5-디아미노-2,6-디메톡시피리딘 및 그 염류(예 : 2,6-디메톡시-3,5-피리딘디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3,5-디아미노-2,6-디메톡시피리딘 및 그 염류(예 : 2,6-디메톡시-3,5-피리딘디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다만, 2,6-디메톡시-3,5-피리딘디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는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2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및 그 염류”를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및 그 염류(다만,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하이드로클로라이드는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N-[4-[[4-(디에칠아미노)페닐][4-(에칠아미노)-1-나프탈렌일]메칠렌]-2,3-사이클로헥사디엔-1-일리딘]-N-에칠-에탄아미늄 및 그 염류”를

“N-[4-[[4-(디에칠아미노)페닐][4-(에칠아미노)-1-나프탈렌일]메칠렌]-2,5-사이클로헥사디엔-1-일리딘]-N-에칠-에탄아미늄 및 그 염류”로 한다.

별표 1 중 “2,3-디하이드로-2H-1,4-벤족사진-6-올 및 그 염류(예 : 하이드록시벤조모르폴린)”을 “2,3-디하이드로-2H-1,4-벤족사진-6-올 및 그 염류(예 : 하이드록시벤조모르폴린)(다만, 하이드록시벤조모르폴린은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3-디하이드로-1H-인돌-5,6-디올 (디하이드록시인돌린) 및 그 하이드로브로마이드염 (디하이드록시인돌린 하이드로브롬마이드)”을 “2,3-디하이드로-1H-인돌-5,6-디올 (디하이드록시인돌린) 및 그 하이드로브로마이드염 (디하이드록시인돌린 하이드로브롬마이드)(다만,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2.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1-메칠-3-니트로-4-(베타-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벤젠 및 그 염류(예 : 하이드록시에칠-2-니트로-p-톨루이딘)”을 “1-메칠-3-니트로-4-(베타-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벤젠 및 그 염류(예 : 하이드록시에칠-2-니트로-p-톨루이딘)(다만, 하이드록시에칠-2-니트로-p-톨루이딘은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시]에탄올 및 그 염류 (예: 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시에탄올)”을 “2-[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

시]에탄올 및 그 염류 (예: 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시에탄올)(다만,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1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3-메칠-1-페닐-5-피라졸론 및 그 염류(예 : 페닐 메칠 피라졸론)”을 “ 3-메칠-1-페닐-5-피라졸론 및 그 염류(예 : 페닐 메칠 피라졸론)(다만, 3-메칠-1-페닐-5-파라졸론은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2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2-메톡시-4-니트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5-니트로아니솔)”을 “2-[(2-메톡시-4-니트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5-니트로아니솔)(다만,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2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6-메톡시-N2-메칠-2,3-피리딘디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염”을 “6-메톡시-N2-메칠-2,3-피리딘디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염(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산으로서 0.68% 이하,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염으로서 1.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1-(베타-우레이도에칠)아미노-4-니트로벤젠 및 그 염류”를 “1-(베타-우레이도에칠)아미노-4-니트로벤젠 및 그 염류(예 : 4-니트로페닐아미노에칠우레아)(다만, 4-니트로페닐 아미노에칠우레아는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25 % 이하,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1-아미노-2-니트로-4-(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5-클로로벤젠과 1,4-비스-(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2-니트로-5-클로로벤젠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레드 No 10와 에이치씨 레드 No 11)”을 “1-아미노-2-니트로-4-(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5-클로로벤젠과 1,4-비스-(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2-니트로-5-클로로벤젠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레드 No 10와 에이치씨 레드 No 11)(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0 % 이하,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2.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4-아미노-3-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를 “4-아미노-3-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다만, 4-아미노-3-니트로페놀은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5 % 이하,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2'-[(4-아미노-3-니트로페닐)이미노]바이세타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레드 No 13)”을 “2,2'-[(4-아미노-3-니트로페닐)이미노]바이세타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레드 No 13)(다만, 하이드로클로라이드염으로서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5 % 이하,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3-아미노-2,4-디클로로페놀 및 그 염류”를 “3-아미노-2,4-디클로로페놀 및 그 염류(다만, 3-아미노-2,4-디클로로페놀 및 그 염산염은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염산염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4-아미노-2-메칠-5-니트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바이올렛 No 1)”을 “2-[(4-아미노-2-메칠-5-니트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바이올렛 No 1)(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25 % 이하,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28 % 이하는 제외)”로 한다.

Ministry of Trade,
별표 1 중 “2-[(3-아미노-4-메톡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아니솔)”을 “2-[(3-아미노-4-메톡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아니솔)(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 1-(2-아미노에칠)아미노-4-(2-하이드록시에칠)옥시-2-니트로벤젠 및 그 염류 (예 : 에이치씨 오렌지 No 2)”를 “1-(2-아미노에칠)아미노-4-(2-하이드록시에칠)옥시-2-니트로벤젠 및 그 염류 (예 : 에이치씨 오렌지 No 2)(다만,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4-아미노-m-크레솔 및 그 염류”를 “4-아미노-m-크레솔 및 그 염류(다만, 4-아미노-m-크레솔은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를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다만,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은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2.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카테콜(피로카테콜)”을 “카테콜(피로카테콜)(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클로로-6-에칠아미노-4-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를 “2-클로로-6-에칠아미노-4-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5 % 이하,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3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4,4’-[1,3-프로판디일비스(옥시)]비스벤젠-1,3-디아민 및 그 테트라하이드로클로라이드염(예 : 1,3-비스-(2,4-디아미노페녹시)프로판, 염산 1,3-비스-(2,4-디아미노페녹시)프로판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4,4’-[1,3-프로판디일비스(옥시)]비스벤젠-1,3-디아민 및 그 테트라하이드로클로라이드염(예 : 1,3-비스-(2,4-디아미노페녹시)프로판, 염산 1,3-비스-(2,4-디아미노페녹시)프로판 하이드로클로라이드)(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

으로 산으로서 1.2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피로갈롤”을 “피로갈롤(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2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1-하이드록시-3-니트로-4-(3-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벤젠 및 그 염류 (예: 4-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3-니트로페놀)”을 “1-하이드록시-3-니트로-4-(3-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벤젠 및 그 염류 (예: 4-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3-니트로페놀)(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2.6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1-하이드록시-2-비타-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4,6-디니트로벤젠 및 그 염류(예 : 2-하이드록시에칠피크라믹 애씨드)”를 “1-하이드록시-2-베타-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4,6-디니트로벤젠 및 그 염류(예 : 2-하이드록시에칠피크라믹 애씨드)(다만, 2-하이드록시에칠피크라믹애씨드는 산화형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5 % 이하,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2.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하이드록시에칠-3,4-메칠렌디옥시아닐린; 2-(1,3-벤진디옥솔-5-일아미노)에탄올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그 염류 (예: 하이드록시에칠-3,4-메칠렌디옥시아닐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하이드록시에칠-3,4-메칠렌디옥시아닐린; 2-(1,3-벤진디옥솔-5-일아미노)에탄올 하이드로클로라

이드 및 그 염류 (예: 하이드록시에칠-3,4-메칠렌디옥시아닐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4-(2-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3-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 (예: 3-니트로-p-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을 “4-(2-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3-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 (예: 3-니트로-p-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다만, 3-니트로-p-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은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3.0 % 이하,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1.8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2,2'-[[4-[(2-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3-니트로페닐]이미노]바이세타놀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블루 No2)”를 “2,2'-[[4-[(2-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3-니트로페닐]이미노]바이세타놀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블루 No 2)(다만,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2.8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5-[(2-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o-크레졸 및 그 염류(예 : 2-메칠-5-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을 “5-[(2-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o-크레졸 및 그 염류(예 : 2-메칠-5-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다만, 2-메칠-5-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은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0.5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1-(3-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2-니트로-4-비스(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벤젠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바이올렛 No2)”을 “1-(3-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2-니트로-4-비스(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벤젠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씨 바이올렛 No 2)(다만,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2.0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 중 “하이드록시프로필 비스(N-하이드록시에틸-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를 “하이드록시프로필 비스(N-하이드록시에틸-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테트라하이드로클로라이드염으로서 0.4 % 이하는 제외)”로 한다.

별표 1에 다음 원료 명칭을 신설한다.

톨루엔-3,4-디아민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

비마토프로스트, 그 염류 및 유도체

센노사이드

아다팔렌

이부프로펜피코놀, 그 염류 및 유도체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그 염류 및 유도체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

6-(1-피롤리디닐)-2,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피롤리디닐 디아미노 피리미딘 옥사이드)

피메크로리무스(pimecrolimus), 그 염류 및 그 유도체

1,7-헵탄디카르복실산(아젤라산), 그 염류 및 유도체

돼지 폐추출물

별표 2 중 자외선 차단성분 다음에 염모제 성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염모제 성분

연번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1	<i>p</i> -니트로- <i>o</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	니트로- <i>p</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3	2-메틸-5-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 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4	2-아미노-4-니트로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2.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5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6	5-아미노- <i>o</i> -크레솔	산화형 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7	<i>m</i> -아미노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8	<i>o</i> -아미노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9	<i>p</i> -아미노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0.9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0	염산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산화형 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1	염산 톨루엔-2,5-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3.2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2	염산 <i>m</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3	염산 <i>p</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3.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4	톨루엔-2,5-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연번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15	<i>m</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6	<i>p</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7	<i>N</i> -페닐- <i>p</i> -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	산화형 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8	피크라민산	산화형 염모제에 0.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9	황산 <i>p</i> -니트로- <i>o</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0	<i>p</i> -메칠아미노페놀 및 그 염류	산화형 염모제에 황 산 염 으 로 서 0.68%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1	황산 5-아미노- <i>o</i> -크레솔	산화형 염모제에 4.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2	황산 <i>m</i> -아미노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3	황산 <i>o</i> -아미노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4	황산 <i>p</i> -아미노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1.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5	황산 톨루엔-2,5-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3.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6	황산 <i>m</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7	황산 <i>p</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3.8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8	N,N-비스(2-히드록시에틸)- <i>p</i> -페 닐렌디아민설페이트	산화형 염모제에 2.9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9	2,6-디아미노피리딘	산화형 염모제에 0.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30	염산 2,4-디아미노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31	1,5-디히드록시나프탈렌	산화형 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32	피크라민산 나트륨	산화형 염모제에 0.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33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산화형 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연번	원료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34	황산 <i>o</i> -클로로- <i>p</i> -페닐렌디아민	산화형 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35	1-나프톨(<i>α</i> -나프톨)	산화형 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36	레조시놀	산화형 염모제에 2.0 %	
37	2-메틸레조시놀	산화형 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38	몰식자산	산화형 염모제에 4.0 %	
39	카테콜	산화형 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40	피로갈롤	산화형 염모제에 2.0 % 비산화형 염모제 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41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 (1수화물) 과산화수소 과탄산나트륨	염모용 제품류에 산화제로 사용할 경 우 제품 중 과산화 수소로서 6.0 % (수출용 제품에서 는 12.0 %)	

별표 2 중 기타 성분 중 레조시놀의 사용한도란에 “0.1 %”를 “산화형 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 0.1 %”로 한다.

별표 2 중 “알에이치 올리고펩타이드-1(상피세포성장인자)”를 “알에이치(또는 에스에이치) 올리고 펩타이드-1(상피세포성장인자)”로 한다.

별표 2 중 징크피리치온의 사용한도란에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에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0%”를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 및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0%”로 한다.

별표 2 중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의 사용한도란에 “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 %” 및 “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를 신설한다.

별표 2의 기타 중 메톡시디시클로펜타디엔카르복스알데하이드란 다음에 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	산화형 염모제에서 유리 SO ₂ 로 0.67%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	--------------------------------------	---------------

별표 2의 기타 중 살리실릭(토코페놀)란 다음에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 %	.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	--	---

별표 2의 기타 중 트리알킬아민, 트리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란 다음에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트리클로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0.3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
-------	----------------------	--------------------

		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 닐리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 에 1.5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 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별표 2 중 살균·보존제 성분 및 기타에 염류 해설을 “염류 : 양이온염으로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및 에탄올아민, 음이온염으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를 “염류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제품은 고시 시행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